

회의록

안건	○ 보고 의안번호 제2026-재심-7-1-1호. 2026년 제6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회의 결과 의안번호 제2026-재심-7-1-2호. 2026년 제6차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 심의·의결서 및 회의록 ○ 심의 의안번호 제2026-재심-7-2-1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5-14-0001) 의안번호 제2026-재심-7-2-2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2-25-827) 의안번호 제2026-재심-7-2-3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4-1-988) 의안번호 제2026-재심-7-2-4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3-1-9695) 의안번호 제2026-재심-7-2-5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2-2-1012) 의안번호 제2026-재심-7-2-6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2-1-14800) 의안번호 제2026-재심-7-2-7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3-1-545) 의안번호 제2026-재심-7-2-8호.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이의신청 건(코로나19-2022-1-16023)		
	개최일시	2026년 7월 13일(월요일)	
	장소	영상회의	
	출석위원	재적위원 15인 중 위원장 1인 포함 총 9인 출석	
회의내용	의안번호	결정사항	세부내용
	제2026-재심-7-1-1호	원안 의결	-
	제2026-재심-7-1-2호	원안 의결	-
	제2026-재심-7-2-1호	기각	붙임1 참조
	제2026-재심-7-2-2호	기각	붙임2 참조
	제2026-재심-7-2-3호	기각	붙임3 참조
	제2026-재심-7-2-4호	보상	붙임4 참조
	제2026-재심-7-2-5호	보상	붙임5 참조
	제2026-재심-7-2-6호	일부 보상	붙임6 참조
	제2026-재심-7-2-7호	일부 보상	붙임7 참조
	제2026-재심-7-2-8호	보상	붙임8 참조

위 안건들에 관한 2026년도 제7회 「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」의 회의록을 작성합니다.

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재심위원회

가. 피접종인 정보

- ○○○/여성/15세/화이자 1차/이상자궁출혈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- 문헌을 추가 검토한 결과, 청소년기 여아에서 코로나19 예방접종으로 인한 이상자궁출혈이 2개월을 초과하여 장기간 지속된 사례를 확인할 수 없어, 장기간 지속되는 이상자궁출혈과 예방접종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
- 코로나19 예방접종 후 이상자궁출혈은 면역반응에 의해 초기 발생 후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, 장기간 지속된다는 근거는 부족함

다. 결정사항

-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 - 기각

라. 기타

- 지난 제6차 위원회에서 결정 보류되어, 이번 제7차 위원회에 재상정

가. 피접종인 정보

- ○○○/남성/60세/아스트라제네카 1차/이명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- 백신 접종 후 발생한 이명은 시간적 개연성이 있고, 다른 원인에 대한 설명이 어려우며, 기존에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지원 결정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
- 이명은 주관적 증상인 만큼 검사 결과 및 의무기록의 일관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,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보상 여부에 대해 신중한 접근 필요

다. 결정사항

-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 - 기각

라. 기타

- 해당 없음

가. 피접종인 정보

- ○○○/남성/61세/모더나 4차/난청, 이명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- 난청 검사 결과의 일관성이 부족하여 객관적으로 인정하기 어려움
- 백신 접종 이후의 이명에 대해서는 접종 후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여 병원을 방문하였고, 완치의 개념이 없는 이명을 모두 보상 범위에 포함하기에는 근거가 부족함
- 이명은 주관적 증상인 만큼 검사 결과 및 의무기록의 일관성이 확인되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할 필요가 있으며, 사회적 영향 등을 고려할 때 보상 여부에 대해 신중한 접근 필요

다. 결정사항

-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 - 기각

라. 기타

- 해당 없음

가. 피접종인 정보

- ○○○/여성/13세/화이자 1차/난청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- 증상 발생 시점(접종 후 약 15분)만으로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배제하기보다는 접종 전후의 임상 경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시간적 개연성은 인정할 수 있음
- 과거 교통사고로 인한 뇌수술 병력이 있으나, 현재 나타난 돌발성 난청 및 어지럼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다고 보긴 어려우며,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음

다. 결정사항

-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 - 보상

라. 기타

- 해당 없음

가. 피접종인 정보

- ○○○/남성/55세/화이자 1차/난청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- 돌발성 난청 진단의 신뢰성이 인정되고 과거력(군복무 중 이명)이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보상 인정이 타당함

다. 결정사항

-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 - 보상

라. 기타

- 해당 없음

가. 피접종인 정보

- 000/여성/65세/아스트라제네카 1차/난청, 뇌동맥류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- 피접종인의 돌발성 난청은 예방접종 직후 발생하여 시간적 개연성이 인정되고, 적극적인 치료가 이루어진 점, 당뇨 환자에서 접종 후 돌발성 난청이 발생할 취약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음
- 뇌동맥류는 예방접종 이전부터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기저질환으로 판단되며, 예방접종으로 인해 발생하거나 악화되었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므로 코일색전술 등 뇌동맥류 관련 진료비는 보상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이 타당

다. 결정사항

-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 - 일부 보상(난청 : 보상, 뇌동맥류 : 기각)

라. 기타

- 해당 없음

가. 피접종인 정보

- ○○○/남성/47세/화이자 3차/난청, 이명, 목 통증 및 양측상지근력 저하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- 백신 접종 후 약 50일경 증상이 시작된 점을 고려하더라도, 기존에 위원회에서 인정한 면역 매개성 신경질환의 확대된 시간적 범위 내에서 검토할 수 있을 것
- 난청 및 이명은 객관적인 의무기록 및 검사 결과가 부족하여 예방접종과의 관련성을 인정하기 어려움

다. 결정사항

-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 - 일부 보상(목 통증 및 양측상지근력 저하 : 보상, 난청 : 기각, 이명 : 기각)

라. 기타

- 해당 없음

가. 피접종인 정보

- ○○○/남성/63세/아스트라제네카 2차/난청, 이명, 안면신경마비

나. 심의 시 주요 발언요지

- 피접종인의 우측 난청은 예방접종 후 발생 시기 및 임상 경과를 고려할 때 예방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과 기전적 가능성을 인정할 수 있으며, 기왕력의 영향을 배제할 수 없으나 백신과 경합하는 수준임
- 안면신경마비는 기존에 관련성 의심질환 의료비 지원 결정을 받았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보상으로 결정 가능

다. 결정사항

-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 결과
 - 보상

라. 기타

- 해당 없음